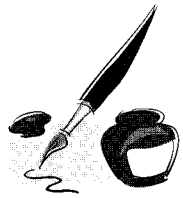

산업의학 역사적 사건에 있어 나타난 산업의학 의사 윤리 문제

동국대 의과대학 / 임 현 술

2009년 대한산업의학회 춘계학술대회 심포지엄 '산업의학 분야의 의학윤리'에서 위의 제목으로 지정 토론한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산업의학 분야의 의학윤리"에 관한 심포지엄이 열리게 되어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임에도 심도 있는 발표를 해 주신 연세대 강명신 교수, 박영만 변호사, 순천향의대 우극현 교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토론할 내용은 산업의학의 역사적 사건에 있어 나타난 산업의학 의사의 윤리 문제입니다. 저로서는 토론하기 어려운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고, 고민도 많았지만 저의 의견도 한 사람의 견해라는 점을 감안하고 들어주신다면 제가 편할 것 같습니다.

타인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 제가 경험한 사례 몇 가지를 이야기하지요.

제가 가정의학 전공의 시절이던 1987년, 형광등 제조업체 근로자 4명이 입원 치료를 하여 서울대학병원 가정의학과 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25명의 근로자 중 18명(72%)이 만성수은중독에 시달리고 있다고 각 신문에 기사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에게는 학문적 업적이 되어 이득을 얻은 셈이지만 경제적으로 도움은 되지 않았고 경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임교수가 장기간 많은 협박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거의 1년쯤 후에 전임의사를 통하여 전해 듣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고통이 따랐으니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요? 이 사건과 이후 가정의학과 팀이 관여한 15세 남아의 수은중독 사망 건은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1992년, ○○레이온 제조회사에서 발생한

이황화탄소 중독은 김정순 교수님과 역학조사를 하여 방사과 이외의 다른 부서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후 몇 사람이 더 인정되는 등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산업보건의 발전에 기여한 사건입니다. 회사가 중국으로 이전한다고 하여 앞으로 중국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요? 저는 겉으로는 이전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말하였지만 속으로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여 좋아하였습니다. 다른 나라 근로자에 대하여 관심이 없던 저의 편협한 모습은 의학윤리의 측면으로 보면 잘못된 판단이겠지요.

1992년경 규조토폐증을 처음 보고하고 난 뒤 1시간짜리 텔레비전 프로를 만들자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영세하였으며, 비밀 유지라는 측면에서 마음이 편치 않아 거절하였는데, 6개월 이내 3개 회사가 문을 닫았고 나중에 1개 회사도 부도 처리되어 기사화하지 않은 저의 선택에 감사하였습니다. 제가 회사를 망치고 근로자 일자리를 없앤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건강을 챙기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산업의학에서 모두의 이득을 만족시키기는 어렵고 양날의 칼에서 고민하여야 하기 때문에 더욱 의학윤리가 절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97년경 용접공에게 망간 중독이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시행한 17명 모두에게서 고신호강도가 관찰되어 노출기준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는데, 전문적인 결정을 떠나 이 사건은 건설노조의 문제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때 저는 다른 단체와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아 학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와 관련을 가지는 것이 경우에 따라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객관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적으로 망간뇌증이 인정된 사람들 중에 제가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로 있는 포항에서 요양을 한 분이 있었습니다. 증상에 따른 의미 없는 치료를 받고 있어 요양을 끝내고 싶었지만, 저는 의미 없는 약을 먹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MRI를 10여 년 후 다시 찍으니 고신호강도는 없었고 대부분 부비동염으로 판독되었지만 이들은 다시 부산 근로복지공단으로 옮겨 요양을 지속하였습니다. 판정이 잘못 내려졌더라도 이미 이들의 인생은 망가졌고 취직은 할 수가 없어 요양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를 중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잘못된 법적 판단은 개인 및 사회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을 모

색하지 못하였습니다. 용기가 없는 것인지, 의료윤리가 부족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유기용제에 의한 저세포성골수로 여러 명이 직업병으로 인정된 적이 있습니다. 의학적 조치로는 단지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씩 골수검사를 시행하면서 10여 년간 휴업급여가 지불되었습니다. 작업 전환 후 근무하면서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설득하고자 하였으나 환자와 노동조합의 저항이 강력하여 요양을 실시하다 보니 이렇게 장기화되어 개인과 회사 및 사회에 부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근무 중 치료가 요양 방법의 일부가 되었지요. 그러나 학습 시간이 너무 길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의학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문제를 제기하고 빠른 시일 내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1999년경 ○○제철회사에서 코크스로 방출물에 의한 폐암을 처음 보고한 후, ○○제철회사 전체가 금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노출이 눈에 띄게 줄었을 때는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사업주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사업주를 설득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이처럼 잘 된 적은 드물었습니다. 쉽지 않다 하더라도 사업주를 설득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직업병 사례를 보고하고 사업주를 설득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겠지요? 타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지요?

2001년경 방사선에 의한 발생으로 추정되는 백혈병 환자를 처음 보고한 후, 방사선보건연구원이 발전해 가며 노출량에 따른 암별 인과관계 선량이 정해진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주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또한 새로운 직업병이 보고된 이후 학술적인 발전과 투자가 이루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에서 우리가 윤리 문제와 관련하여 고민할 일이 무엇일까요?

업무관련성 판정은 반드시 언급하여야 할 내용입니다.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의학 전문의는 작업 및 환경과 관련하여 보상이 되는 질환이라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업무관련성 여부를 밝히지 못하더라도 의료인은 진단서 및 증명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진단서나 증명서에 직업병 의심이라고 표기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청구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만 이러한 청구가 너무 많다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청구하도록 하여야겠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지만 이를 언급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음성난청이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작업 전환을 할 곳이 없어 직업병이라고 판정하면 직장을 퇴직하여야 할 경우, 근골격계 질환 인정기준을 준수하여 판정하면 대부분 업무관련성이 있어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일자리는 중요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정하지 않더라도 추적 조사는 늘 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입니다. 산업의학 의사는 환자의 발병 원인 및 유발 인자를 파악하고 경우에 따라서 보상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데 고민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외과의사는 충수돌기염을 70% 정도만 진단하면 명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잘못 판단하면 이로 인해 사회적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를 항상 연구하여야 할 것이며, 다른 판단 기관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견이 있다면 대화와 토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업무관련성을 아무리 객관화하려 하여도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고민이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돈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인간적인 도덕규범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인 및 단체와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근로자, 사업주, 노동 단체, 사업주 단체 등 다양한 집단과 가능하면 긴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 건강에서 사업주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설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금연을 하면 10%의 직원이 금연을 따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같은 의견을 밝히고 약속을 지켜 신의를 얻는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무조건 주장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또한 한 단체와 관련하여 그 단체의 의견만을 반영한다면? 어떤 단체에서 오신 분은 업무관련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산업의학 전문의는 퇴출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지만, 산업의학 관련자는 모든 단체와 기업, 정부 조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것입니다. 자기 소신대로 일한 결과를 이유로 퇴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론과의 관계입니다. 직업병의 심각성 또는 개인이나 단체의 업무관련성 인정을 위하여 언론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기자는 조심하여야 한

다는 말이 있듯이 이럴 때에도 신중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에게 부담이 될 수 있겠지요?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이후 언론이 알게 되었다면 모르지만 먼저 언론에 알리는 것은 심사숙고하여야 하겠지요?

언론은 선정적으로 보도하고자 하며,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만을 보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인은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신문에 내면 도움이 될 텐데 기자가 알아서 내주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기자는 알려 주지 않으면 알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관련성을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조사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기사화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근로자 건강을 위하여 기사화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기사화되면 근로자 건강이 향상될까요? 고민이 필요합니다.

법 관련자와의 관계입니다. 개인이나 단체의 업무관련성 인정 문제를 법에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원과의 관계도 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너무 밀착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 관련자를 통한 방법이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법을 판정하는 사람이 올바르게 판정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도와야 하겠지요. 약자를 돕는 것인데,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이에 대하여 토론을 하여야 하겠지요.

과거 B형 간염이 있는 사람에게서 발생한 간암이 법정에서 직업병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 산업의학 관련자와 법 관련자가 모여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B형 간염이 있는 사람에게서 간암이 발생하면 이는 자연 경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직업병으로 인정되는 것은 좋은데 이러한 결과로 B형 간염이 있는 사람을 취업을 시키지 않는다면 누가 손해를 볼 것인가요? B형 간염이 진행되어 간암으로 인정된다면 어느 암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발제자인 변호사께서 언급한 간암의 인정기준에 대한 논란은 당연히 있어야 하며, 우리는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은 낮다고 이야기하여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만일 B형, C형 간염과 관련되어 발생한 간암을 과로와 연결하여 직업성 암이라고 주장한다면 아마 원인을 모르는 모든 암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개인별로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요? 과로사가 제기된 일본보다 더 많은 뇌심혈관계 질환자가 업무관련성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여야 할지

요? 우리나라 근로자가 더 과로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법적으로 인정이 많이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법 관련자와 함께 대화와 토론을 할 기회를 많이 가져 상당 인과관계 및 객관성에 대한 기준을 수립한다면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우극현 교수께서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유해 환경 관리, 학술적 노력, 응급상황 대비 능력, 사업주와 관계 개선, 설명과 교육, 조사 및 연구, 직업적 윤리 등 여러 가지의 산업보건 전문 인력의 임무와 책임을 언급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20명 이내의 상담을 하면서 할 일은 우리는 100명 이상을 상담하면서 모든 일을 다 하라고 한다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산업의학 관련자가 윤리, 종교, 법, 철학적으로 완벽하기를 원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되도록 객관적이며, 개인의 경제적 이득이 없어야 더 의미가 있는데 이러한 이득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또한 한쪽에 치우치거나 일방적인 의견도 제시하여야 하는데 그러면 너무 외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적 윤리관의 확립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보상을 위한 진단서 작성 및 증언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겠지요? 그러면서 학술적인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객관성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하겠지요. 자신의 개인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지요. 법을 지키는 것이 올바르도록 틀린 법은 수정하여 제대로 된 법이 세워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지요. 남의 의료윤리를 비난하기는 쉽지만 자신이 의료윤리에 맞추어 행동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이 계기가 되어 더 많은 의학윤리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갈 길이 멀고 힘들더라도, 지속적인 대화와 논의는 우리를 풍족하게 해 줄 것입니다.